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전남지역 정책토론회

일 시 : 2018. 4. 11.(수) 14:00 ~ 16:30

장 소 : 전남여성플라자 207호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남도(노인장애인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최낙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남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체들간 연대와 협조를 해주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용목 대표님을 비롯한 박대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님, 그리고 전라남도 도의회 박철홍 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은 물론 함께 해 주신 인권활동가와 인권강사님들, 지방정부 최일선에서 장애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장애인 당사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협력으로 2007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8년 12월에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명실 공히 장애인 인권 관련 체계를 갖춘 인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장애인의 문제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의 문제’로서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과 권리의 주체’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지역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는 등 장애인인권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상습폭행, 학대사태가 여전하고,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차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계속 접수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각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장애인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제도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에 맞춰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과 성과들을 점검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지역사회의 관심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1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최낙영**

안녕하십니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대희입니다.

저희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모든 일상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함께 하는 연대체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전남지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전남지역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전라남도’,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의 결실로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장애인들의 인권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적·제도적 조치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 보호, 존중, 실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과 권리구제는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전남지역 장애인의 인권실태 등을 진단하고 인권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과 전라남도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남의 장애인들이 더 이상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지
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11.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 대 희**



축사

Greeting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철홍의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전라남도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박대희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님**과 **김용목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님**, 그리고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우리 전라남도는 2010년에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 8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라남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 차별이 크게 해소되고, 도민들의 인식 역시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전라남도는 열전 노예사건, 축사 노예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등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차별이 발생되고, 이를 접한 모든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아픈 과거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 전라남도의 장애인 학대 및 차별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의 중리를 모아 **장애인 학대 예방과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폰 앱을 시작으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조례, 여성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유치, 장애인 실업팀 창단을 하였고, 이번에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신장 장애인을 위한 조례 등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좋은 정책적 제안들이 실현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11.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원 **박철홍**

- 일 시: 2018. 4. 11.(수) 14:00 ~ 16:30
- 장 소: 전남여성플라자 207호(54석 규모)
-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남도(노인장애인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 상: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 단체 활동가 및 당사자 등
- 내 용: 전남 현안, 장치법 평가 및 논의 등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 및 축사	14:00~14:03	[진행사회] • 송병관(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
	14:03~14:10	[축사] • 박대희(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김용목(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박철홍(전라남도의회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회 : 최낙영(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세션 1	14:10~14:30	[기조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정호균(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장)
세션 2 (지역현안)	14:30~15:00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 장애 여성 차별금지의 현주소 서미화(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토론 1] 문애준(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15:00~15:30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나? 허주현(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토론 2] 최경순(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15:30~16:00	[발제 3] 공을 차야 골을 넣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 누가 무엇을 왜 준비해야 하는가? 도연(활동가) [토론 3] 모지환(한국사회조사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및 폐회	16:00~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 세션1

- [기조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1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장)

◆ 세션2

-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
 장애 여성 차별금지의 현주소 19
 서미화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 [토론 1] 차별구제 못하는 장차법의 한계 및 발전 방향 모색 35
 문애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나? 45
 허주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토론 2]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노력과 개선 과제 53
 최경순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발제 3] 공을 차야 골을 넣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
 누가 무엇을 왜 준비해야 하는가? 59
 도연 (활동가)
- [토론 3] 『장애인 자립생활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 67
 모지환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연구위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전남지역 정책토론회

[기조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정책팀장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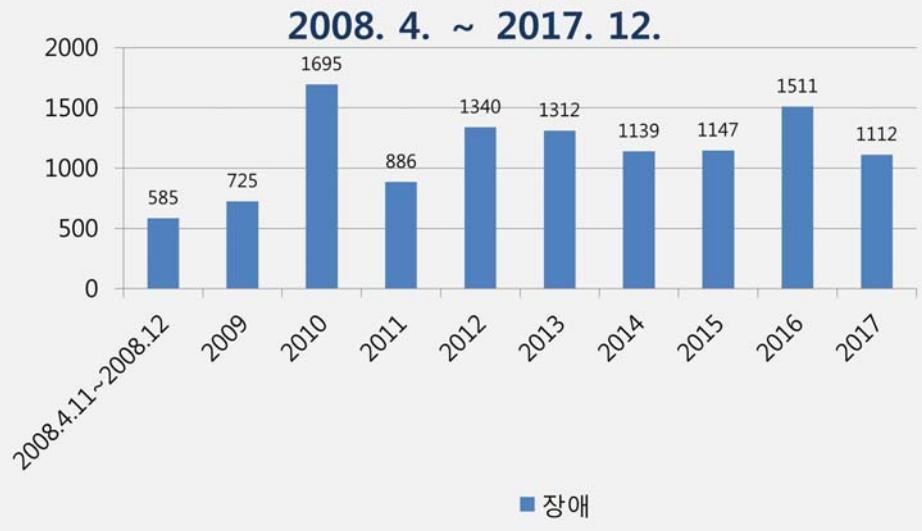
2001. 11. ~ 2017. 12.

인권위 차별 진정건수
26,439건

“장애” 차별사유
11,452건
43.3%

성별, 종교, 나이, 학력, 신분 등 18개 사유의 차별
14,987(56.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및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및 분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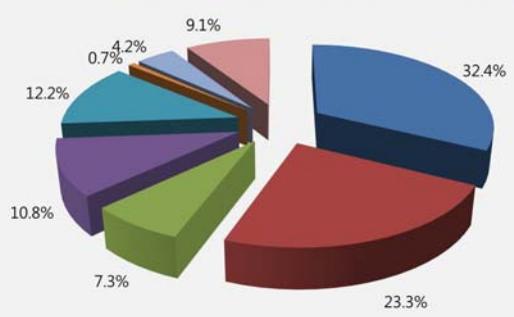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08. 4. 11. ~ 2017. 12. 31.

(단위: 건, %)

구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전체	계	11,452	3,714	2,666	838	1,235	1,394	85	476	1,044
	비율	100.0	32.4	23.3	7.3	10.8	12.2	0.7	4.2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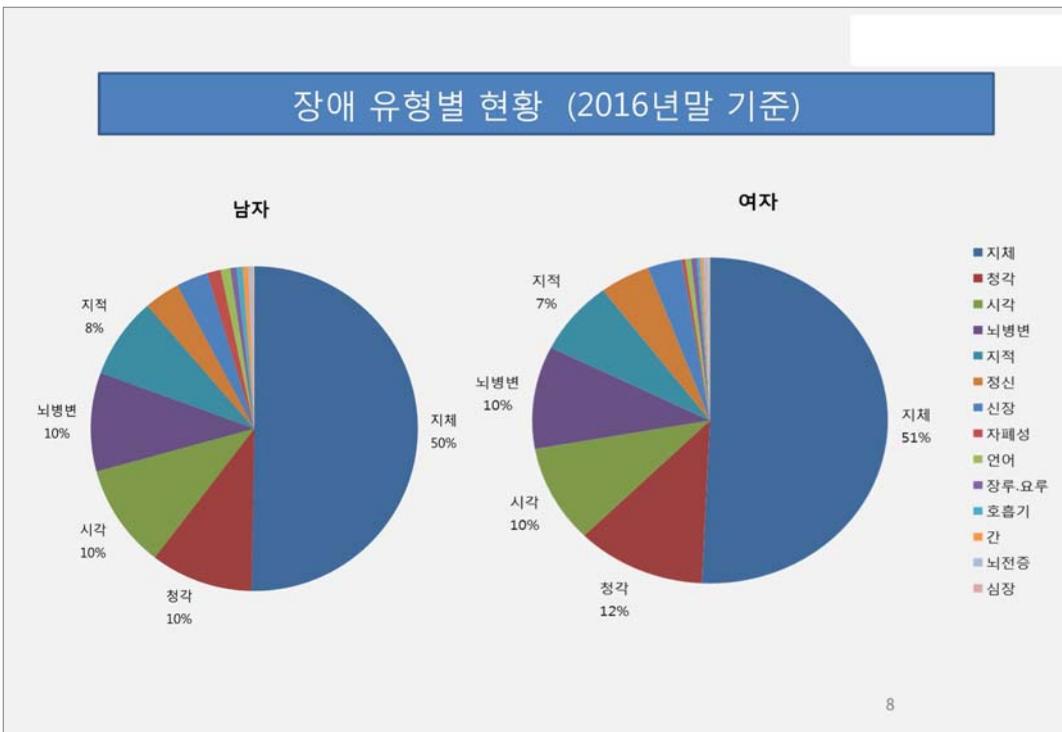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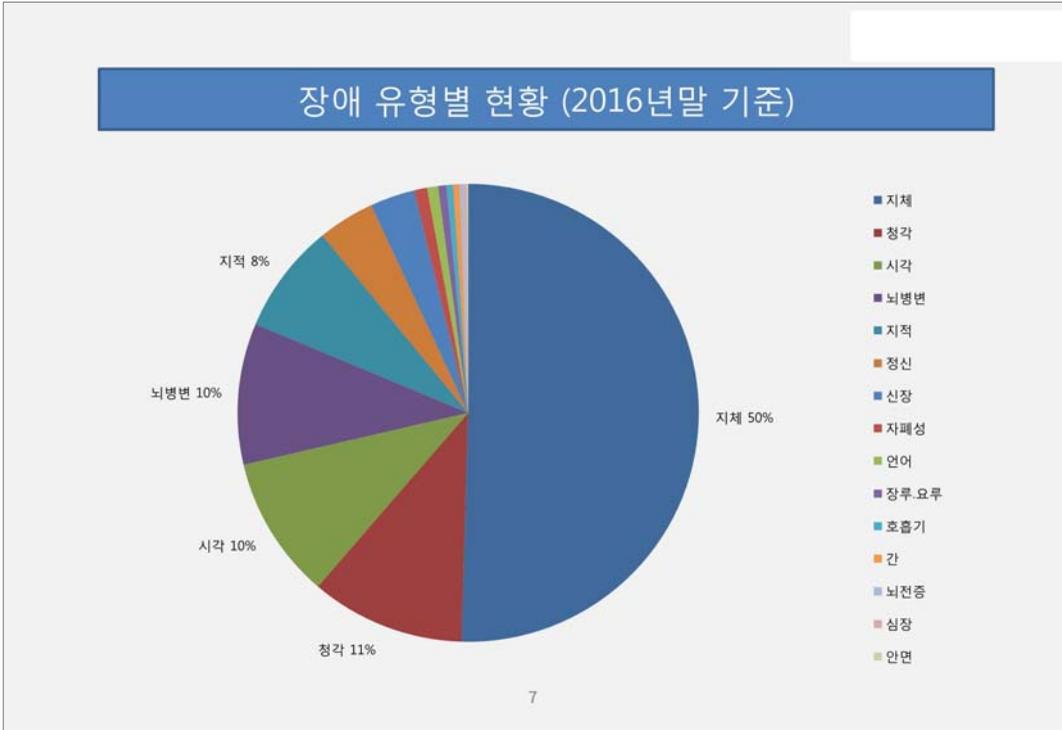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및 분석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08. 4. 11. ~ 2017. 12. 31.



■ 지체 ■ 시각 ■ 뇌병변 ■ 청각 ■ 발달 ■ 언어 ■ 정신 ■ 기타

지체 및 시각장애인 사건 합 55.7% 차지



인권위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정책권고 언론보도

SBS 2017년 12월 26일 (화) 종합

국가인권위원회, "소규모 음식점 장애인 경사로 의무화" 권고



연합뉴스 2017년 12월 26일 (화) 사회

인권위, "소규모 음식점도 장애인 경사로 의무화해야" 권고

인권위, "소규모 음식점도 장애인 경사로 의무화해야" 권고



KTV 한국정책방송 2017년 12월 26일 (화) 종합

인권위, "소규모 음식점도 장애인 경사로 의무화"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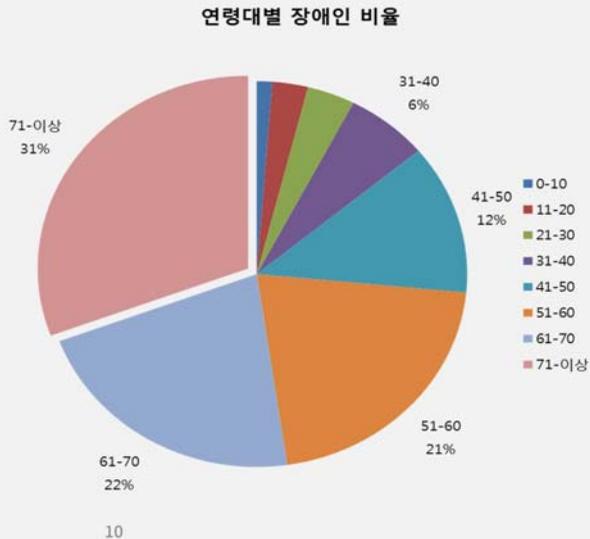
MBC 2017년 12월 26일 (화) 사회

인권위 "소규모 음식점도 휠체어 경사로 설치해야"



연령대별 장애인 현황 (2016년말 기준)

나이	합계	비율(%)
0-10	29,954	1.2
11-20	68,583	2.7
21-30	92,371	3.7
31-40	159,476	6.4
41-50	315,771	12.6
51-60	531,056	21.1
61-70	544,109	21.7
71-이상	769,731	30.7
전체	2,511,051	100.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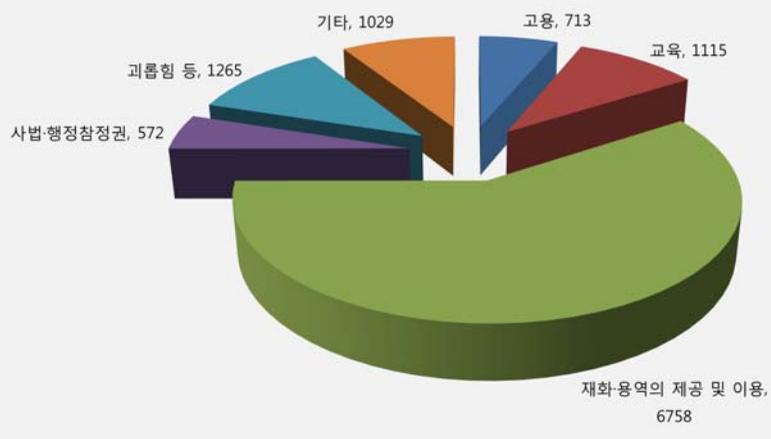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08. 4. 11. ~ 2017. 12. 31.

(단위: 건, %)

구분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전체	접수	11,452	713	1,115	6,758	572	1,265	1,029
	비율	100.0	6.2	9.7	59.0	5.0	11.1	9.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및 분석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08. 4. 11. ~ 2017. 12. 3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및 분석

차별영역별(재화용역)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08. 4. 11. ~ 2017. 12. 31.

(단위: 건, %)

구분	계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전체	접수	6,758	1,780	721	1,400	808	1,729	320
	비율	59.0	15.5	6.3	12.2	7.1	15.1	2.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및 분석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자폐	언어	정신	기타	
소계	11,452	3,714	2,666	838	1,235	1,394	85	476	1,044	
고용	713	260	73	58	111	55	15	42	99	
교육	1,115	439	85	58	92	353	6	14	68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용역 일반	1,652	527	370	191	136	238	13	63	114
	보험·금융	721	157	144	72	131	106	8	57	46
	시설물 접근	1,400	960	196	113	16	16	2	5	92
	이동 및 교통수단	808	399	172	70	26	40	5	2	94
	정보접근·의사소통	1,729	39	1,188	17	343	27	6	2	107
문화·예술·체육	320	66	27	17	62	119	-	7	22	
사법 행정	405	79	86	21	46	76	5	49	43	
참정권	167	59	32	7	3	8	-	3	55	
괴롭힘 등	1,265	331	74	120	214	254	13	151	108	
기타	1,157	398	219	94	55	102	12	81	196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및 분석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접수 세부유형

2008. 4. 11. ~ 2017. 12. 31.

(단위: 건, %)

구분	계	고용영역								
		모집 채용	임금 복지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전체	접수	713	262	96	72	16	31	159	7	70
	비율	100.0	36.8	13.5	10.1	2.2	4.4	22.3	1.0	9.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및 분석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접수 세부유형

2008. 4. 11. ~ 2017. 12. 31.

(단위: 건, %)

구분	계	교육영역							기타
		전 입학 거부 제한	시설물 접 근 및 이용	수업 편의 제공	수업 등 교내 활동	특수 학급 설치	괴롭힘		
전체	접수	1,115	91	61	205	134	88	42	494
	비율	100.0	8.2	5.5	18.4	12.0	7.9	3.8	44.3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사항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시행 2018. 3. 2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야영장업 등
4. **국제회의업**
5. **카지노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시행 2018. 3. 27.]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별표 4의2]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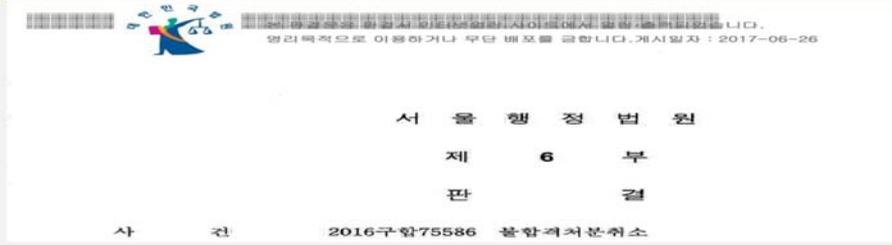
1.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른 **5성급 또는 4성급의 호텔업**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
2. **2030년 3월 20일부터 적용**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사업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사항

제49조(차별행위)) [시행 2018. 6. 20.]

-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서울행정법원 판례(정당한 편의 미제공, 2017. 6. 16.)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국세청장이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판례(정당한 편의 미제공, 2017. 6. 16.)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6. 6. 17. 언어장애를 이유로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 국세청장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뇌병변 1급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고에게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원고가 언어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며, 피고 국세청장이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이다.

하다. 따라서 원고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가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3

서울중앙지법 판례(정당한 편의 미제공,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519728 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16. 12. 13.
판 결 선 고 2017.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4

서울중앙지법 판례(정당한 편의 미제공, 2017. 2. 9.)

(3) 피고가 이 사건 면접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가 가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는지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를 의미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선발과정에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원고가 전화문의 등을 통해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선발과정에 지원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하여 원고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문자통역 등 원고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이나 시험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면접 당일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의 면접순서를 조정하여 주고 배우자의 동석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5

서울중앙지법 판례(정당한 편의 미제공, 2017. 2. 9.)

(2)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의 행위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므로, 그와 같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는 위 상대방에게 편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을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하게 하는 것은 증거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26

서울중앙지법 판례(정당한 편의 미제공, 2017. 2. 9.)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의 이 사건 각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차별행위의 성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손해배상)

-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전남지역 정책토론회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 장애 여성 차별금지의 현주소

서미화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 장애 여성 차별금지의 현주소

서미화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시행되기 시작하여 시행 10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시행 10년차를 맞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장애인 관련법이 14개가 더 존재한다.

이 법률들의 이름과 제정연도,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을 잠깐 살펴보자면 아래 내용과 같다.

	법명	제정년도	관련조항
1	장애인복지법	1981. 06. 05	제7조, 제9조②, 제37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 01. 13	-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 04. 10	-
4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005. 07. 29	-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007. 04. 10	제3장 제33~34조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 05. 25	-
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08. 03. 21	-
8	장애인연금법	2010. 04. 12	-
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01. 04	-
10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2. 08. 04	-
1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02. 22	-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05. 20	-
13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15. 12. 29	-
1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5. 12. 29	-

자료: 2017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16회 여성장애인대 대회자료

위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14개의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률에 장애여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개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7조, 9조, 11조에 장애여성에 대한 권익보호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으로 매우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여성에 관한 장이 3장에 별도로 명시되면서 다른 법률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33조와 34조에 명시하고 있다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 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조에 장애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3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의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의무를 담아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2장에 속하는 차별금지 장에서도 28조에 모부성권을 말하면서 장애여성의 별도의 3장 이전에 이미 2장 28조에 장애를 이유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제한·분리·배제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33조에서 다시 한 번 여성장애인의 장애를 이유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권리를 강제 혹은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차를 맞는 이 시점에서 장애여성들에 대한 모성권에 대해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

장애여성에게 있어 모성권은 비장애 여성들에게 모성권에 해당하는 임신·출산·육아를 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기를 요구해 왔다면 장애여성에게 있어서 모성권에서 말하는 임신 자체를 할 권리부터 박탈 당해온 장애여성들의 차별의 역사가 전제되었던 것이다.

비장애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는 그 시작과 내용이 더욱 차별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장애여성의 모성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성권에 대한 권리를 권리로서의 관점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냉정한 평가와 구체적인 정책 실천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전라남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장애여성 모성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전남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이다.

위 조례에는 실제적으로 근거법령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조례상 명시하지 않고는 있으나 그 내용과 의미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여성을 장애를 이유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제한·분리·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3조와 4조 도지사의 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부인과 확대 등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도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제7조에는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인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전남도가 장애여성을 고려한 산부인과 관련 의료기기를 일부 지원할 수 있고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과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내용 중 실제로 목표를 중심으로 강진, 여수, 순천에 4곳의 여성장애인 거점산부인과를 지정·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여성들이 전남 여성장애인 거점산부인과를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여전히 의료진들의 장애여성에 관한 편견과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유형별 인식부족 등이 산부인과 이용하는데 불편과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2017년 전남도의회와 목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여성 자조모임인 그녀들의 이야기 방과 진행한 바 있다.

전국 최초 장애여성을 특화한 여성장애인 거점산부인과의 지정은 환영할 만하나 앞으로 여성장애인들이 그 목적대로 임신·출산을 장려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극 실천해야 할 의료진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여성장애인에게 적절하게 활용되어진 의료장비 활용기술향상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산재하고 있다.

또한 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데 전남도는 아직 구체적인 장애여성들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이나 정책이 전무하다.

심지어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내용이 추가되면서 전국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가사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본 취지는 장애여성들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했던 가사도우미사업이었으나 현재 전남도는 이 사업의 내용을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심사에서 탈락한 장애인들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형시켜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가 담고 있는 지원 사업계획이나 정책수립과 전혀 상관없이 2017년 전남도에 110명에 해당된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했던 장애여성 중 서비스를 지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거점 산부인과 지정을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나 조례에 담겨져 있는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사업진행은 전무한 것에 대한 성찰과 이제라도 조례에 명시된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동시에 제1조 목적에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모성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장애여성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차원의 관점이 아니라 장애여성에 대한 시혜적인 관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현실은 결코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전국 자치법규들속에 장애인지원조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조례들을 검토하다 보면 여전히 시혜적이고 차별적인 용어를 담아 법규들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 법규의 현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지방자치 법규들 속에 권리로서의 관점이 미흡한 용어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용어에서부터 인권적 관점, 성인지적 관점을 담아내는 활동과 실천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법률이나 자치법규에서 말하는 차별금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추진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십 년 전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법률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법률이 사문화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실효성이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29조에서 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성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주체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30조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교육권, 재산권, 거주 자유에 대한 권리, 사회활동 등에 대한 권리 등을 제한, 구속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도 하고 있다.

이어 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서 가정 내 유기학대를 금지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내용에서 말하는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성폭력이나 가족 내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피해현황이 주로 장애여성인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의 현실이 장애남성에 비해 폭력에 노출되어지기 쉬운 성문화,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폭력가해자는 직계가족이 54.4%, 배우자가 37.6%로 나타났다.(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그래서 십여 년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에서부터 한국 장애여성들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전달되어 2006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에도 장애여성들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이 별도로 채택되었다. 이를 이어 2007년 지속적인 한국사회의 장애여성들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성적 괴롭힘, 가족 내에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차별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별도의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무색하게 할 만큼 지난 십년간 장애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보호하는 국가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 장애여성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는 십 년 전 대구에 통합 상담소 1곳과 광주 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 1곳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십년이 지난 현재에도 가정폭력의 피해자 상담의뢰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전국에 여전히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는 대구와 광주 단 2개소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또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쉽터는 전국에 유일하게 광주에 한 곳 뿐이기도 하다. 인근지역인 광주장애인가정폭력 상담소의 최근 3년간의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담실적(건)

년도	총계	가정폭력	기타상담
2015	844	324(38%)	520
2016	845	372(44%)	473
2017	673	352(52%)	321

■ 상담방법(건)

년도	전화문자	방문	내방	사이버	계
2015	361(43%)	285(34%)	170(20%)	28	844
2016	447(53%)	236(28%)	142(17%)	3	845
2017	362(54%)	199(30%)	84(12%)	27	673

■ 가정폭력가해자 유형(명)

년도	배우자	부모형제	계부모	동거하는친족	기타	계
2015	35	17	1	4	8	65
2016	39	15	2	3	23	82
2017	27	10	2	9	17	65

■ 가정폭력피해자 성별(건)

년도	남	여	계
2015	84(26%)	240(74%)	324
2016	59(16%)	313(84%)	372
2017	59(17%)	293(83%)	352

자료: 광주장애인가족폭력상담소 2015년~2017년 상담통계

위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 사례가 최근 3년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5년에는 총 상담 건수 중 38%에 해당하는 324건, 2016년에는 44%에 해당하는 372건, 2017년에는 52%에 해당하는 35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장애인가정폭력상담 의뢰가 되면 상담 방법이 다 비장애인들의 방법처럼 내방상담이 많은

것보다 접근성 때문에 상담원이 직접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방문상담 건수가 매우 높다.
 가해자의 유형 또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70~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은 80% 이상이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성장애인이다.

2016년 대구 장애인통합상담소 실태조사에서는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차별의 현실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정폭력이 진행됨으로서 가정폭력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언어, 신체, 정서, 경제 등 다양한 가정폭력의 형태중 신체적 폭력이 8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피해실태나 피해자 지원정책도 가정폭력과 별반 다르지 않게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지역인 전남지역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했던 최근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연도	성폭력	가정폭력	기타/일반/성상담	총계
2017	1,258	141	155	1,554
2016	1,309	46	125	1,480
2015	1,240	109	106	1,455
총계	3,807	296	386	4,489

자료: 목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통계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가 거듭될수록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상담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십년동안 상담소 지원현황 또한 가정폭력상담소와 같이 십 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고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매년 비장애 여성 중심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은 전남지역만 해도 아래와 같이 꾸준히 그 수요가 증가하여 설치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기관 분류	개소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2곳
성폭력 상담소	6곳
장애인성폭력상담소	1곳
가정폭력 상담소	9곳
성매매 상담소	3곳
성매매 자활센터	1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곳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2곳

자료: 목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그러나 장애여성을 특화하여 지원하는 상담소는 십 년 전 전남 여성장애인연대가 2006년 개소한 목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단 1개소 였는데 여전히 십년 전과 다름없이 전남 여성장애인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단 1개소뿐이다.

이는 성폭력피해자 지원 상담소 뿐 아니라 전남지역 장애여성가정폭력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인 쉼터는 십 년 전과 같이 여전히 전무한 상태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은 비장애인과는 말할 것도 없고 장애남성에 비해 보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권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장애여성의 노동권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차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여성의 월수입이 52만 3,000원으로 남성장애인 월 소득 128만 6,000원에 비하면 장애여성의 월 소득이 50%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여성장애인의 노동권의 현실은 절대적 궁핍과 빈곤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장애여성의 교육권 또한 초등학교 미취학이 여전히 58%로 2014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재시행 10년차를 맞아 장애여성들의 교육, 노동, 모성권, 성적 권리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여전히 십년 전과 별 차이 없이 발생되고 증가되고 있는 장애여성의 차별과 폭력이 이 사회 전반적이고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발생되고

되려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좁혀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장차법 10년을 맞이하면서 십 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필자는 생각하면서 십 년 전 장차법이 제정될 때만해도 다른 장애관련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장애인 조항을 담은 장이 별도로 마련된다는 것만으로도 어찌면 장애여성의 한사람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우리 사회의 장애여성들에 대한 차별의 유형과 폭이 조금은 달라지고 좁혀지리라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십년이 지난 지금 노동, 교육, 모성권, 가족 내 차별, 성차별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은 장애여성의 차별과 폭력의 현실, 장애여성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는 상담소나 보호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맞닥들이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장애여성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또한 아주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조항으로 적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예를 들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과 폭력이나 성차별, 장애차별적인 권력구조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담아내고 실태조사에 의한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장애인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이 적어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몇 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을 맞아 보다 적극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 법률개정을 통한 장애차별금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한 장애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차별과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인식개선과 사회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이 가부장적이고 장애 차별적인 우리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차별을 넘어 반인륜적인 폭력적 상황이 십년 전과 별다를 바 없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또 십 년이 가고, 이십 년이 간 다해도 우리사회에 적극적인 법과 제도개선과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여성장애인의 차별과 폭력의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최소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구제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차를 맞아 확대될 수 있는 기대를 장애여성당사자로서 다시 한 번 가져본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인권증진을 위한 요구는 어떤 법률보다 앞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십 년동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장애여성 당사자들은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장애 관련법들에 모호하리만큼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장애여성법, 제도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한국사회 여성장애인들은 다양하게 자행되는 장애여성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 정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향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여성에게 차별과 폭력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만큼 담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장애계에서 지금까지 법제도 마련을 요구해온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2012년 이전 발달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장애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2012년 별도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장애관련법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들을 통합적으로 모아 일관성 있게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장애여성의 장애인지적 관점과, 성인지적 관점을 담아낸 별도의 장애여성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법률들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도 장애여성에게 처해진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장애여성의 다중적 차별과 폭력의 현실을 기어 이 개선하고 장애여성이 존엄한 한사람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 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사회가 상식적인 사회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함을 제언한다.



부록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17.6.20.] [전라남도조례 제4235호, 2017.6.20., 제정]

전라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이하 “산부인과”라 한다)란 전동식 수술대, 이동식 초음파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용 의료장비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전문병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부인과 확대 등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도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등)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사업
2. 여성장애인 자녀 양육 지원 사업
3. 여성장애인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사업
4.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산부인과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의료장비 등을 갖춘 병원을 산부인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부인과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실태, 여성장애인 만족도 등 조사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 등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지정방법,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35호, 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전남지역 정책토론회

[토론 1]

차별구제 못하는 장차법의 한계 및 발전 방향 모색

문애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차별구제 못하는 장차법의 한계 및 발전 방향 모색 -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문애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I. 들어가며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 한국말로 흔히 접근성으로 번역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애물들이 다르다면 그 다른 장애물에 맞는 어떤 조건을 제공해주는 것,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이다.

우리 사회에서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가 필요한 대표적인 소수자, 장애인들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¹⁾들은 법적·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탄생하게 된 바탕에는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이 있다.

미국 장애인법 ADA(Americans with Disability Act)는 장애인이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및 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여러 형태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ADA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이 장애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2015년에는 미국 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25주년이 되었던 해로 이를 기념한 많이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올해로 10년 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제대로 된 기능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제대로 된 기능은 무엇일까? 장애인은 유색 인종과 다른 소수자 집단에 의해 경험되는 것에 맞먹는 편견과 차별을 자주 경험하며,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고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Gordon and Rosenblum 2001; Hahn 1988; Siebers 2008). 여성장애인의 위치는 더욱 불리하다 할 수 있다.

여성장애계에서는 장차법이 제정되고 제3장 33조, 34조 조항²⁾이 여성장애인의 당면하고 있는

1) 한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2007년), 미국 『장애인법』(1990년),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1992년), 영국 『장애인고용법』, 『장애인권리위원회법』, 『장애인차별법』(1995년), 스웨덴 『장애인차별금지법』(1999년), 독일 『장애인평등법』(2002년).....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라 기대가 컸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과 남성, 여성장애인과 비장애여성,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이라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에서 교차되는 다양한 차이들로 인한 차별 및 권력과 위계 속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차별을 구제할 수 있는 법과 시행령은 존재하나 여성장애인들이 지속적인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장차법은 여성장애인들이 당면한 문제해결의 힘을 갖기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좁게 정의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장차법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여성장애인이 주변화 되지 않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과와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본 장차법의 한계

전남여성장애인연대(이하 '전남여장연')에서 전남지역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여성장애인이 당면한 문제(안전권, 모성권,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 여성장애인 안전권에 관련한 실태조사는 전남의 지역별(여수,순천,해남,진도,담양,곡성,목포,무안,영암등), 장애유형별로 총 300명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안전 위해 요인으로 교통수단 및 일상적인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고 나타났으며, 외출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위험하기 때문(55.1%), 공공시설(공간)에 장애인 관련 안전(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48.1%),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성폭력)위험 때문(26.7%), 행선지로 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교통수단 및 길 안내 정보 부족)(21.9%)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여성장애인 모성권(임신·출산·양육)에 관련한 실태조사 전남의 12개 지역(동부권/서부권/중부권), 만18세 이상 성인 여성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여성장애인 임신에 관한 임신·출산 시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및 이동에 따른 어려움으로 '병원내 편의시설 설치 미비'(33.9%), '병원비 등의 경제적 부담'(27.4%), '병원을 이동하는데 있어 어려움'(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내 편의시설 및 병원이용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의사, 간호사 등)'(32.8%), '산부인과 의료기구(검진대, 수술도구)'(30.9%), '여성장애인을 고려한 전담서비스(또는 인력) 부족'(14.5%) 순으로, 출산 후 조리의 어려움에 따른 '여성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필요성'과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책제언을 통해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거점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소됨).

2015년 실시한 여성장애인 고용 및 노동관련 실태조사는 전라남도 지역의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여성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동부권/서부권/중부권), 장애유형별로 노동시장 진입 저해 요인, 재취업, 직업훈련 상 어려움, 취업욕구 및 희망하는 고용서비스 욕구, 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을 파악한 결과로는 전남 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21.6%), 전라남도가 여성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해야한다(20.1%), 여성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미비 및 수립필요(19.7%)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3%지만 여성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격차가 27.9%포인트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장애인+비장애인)에서 남성(74.3%)과 여성(52.7%)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인 21.6%포인트보다도 6.3%포인트 높다. 특히, 장애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성은 0.2%포인트 감소하는 등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취업자) 가지려고 노력한 이들(실업자)을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경우 남녀 격차가 더 큰 배경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육아가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비장애인에 비해 아이를 돌보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하는 장애인 여성은 경력이 단절될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아이가 큰 뒤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더라도 경력과 무관한 시간제 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정준호(2017), 일하는 여성장애인,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쳐, 한국일보).

2016년에는 여성장애인의 건강은 실제 성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중요한 건강문제를 안고 있으나 지금까지 여성정책과 장애인정책 어디에서도 논의되지 않는 주변적 위치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 정책 대상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해 온 여성장애인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 지역 여성장애인 건강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여성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전라남도 11개 권역(동부권/서남부권/중부권) 거주여성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전남의 여성장애인 <36.4%>가 장애 및 만성 질환 등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6.7%>로는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불편함으로 <31.4%>가 진료비 부담, <16.7%> 여성장애인 몸에 대한 의료진 인식 부족, 병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 <13.9%> 등으로 응답자의 <62%>가 평소에 병원 이용을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건강권법 제정에 따른 여성장애인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건강주치의 제도 필요성에 <84.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등급별 건강주치의제도 필요성 역시 <81%>로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전남여성연에서는 2005년 창립이후 현재까지 차별적 배제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역량강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차별실태를 알려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근거로 전라남도 11개 권역(동부권/서남부권/중부권) 여성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권 차별 사례와 실태를 파악하였다.

장애인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전 국민 교육정도와 장애인 성별 교육정도에서 여성장애인은 초등학교 <34.7%>, 중학교 <13.7%>, 고등학교 <17.9%>로 나타났고, 무학, 미취학 합쳐 <28.6%>가 나왔다. 일반인, 남성장애인과 비교해 상위학교를 진급할수록 편차가 2~3배 차이가 나, 여성장애인 교육기회에서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남여성연’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등록된 장애인 중 반수가 여성이라고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역 여성장애인들도 당면한 문제임을 인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이슈화 및 정책제언을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만드는 구조를 해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법에서처럼 여성장애인 조항이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원 범으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여성장애인운동 방향에 대한 통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차법의 제 3장 33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들을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34조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단체의 의무에 대한 조항들은 여성장애인이 당면한 문제들을 미시적으로 다루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Ⅲ. 여성장애인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모색

여성장애인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다름(social difference)의 문제로 재구조화하고, 생물학적 차이와 상호작용하여 차별을 생산해 내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을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2012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 지원은 교육, 복지, 고용, 각종 폭력 예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문제로서 관계부처 간 종합적인 계획 및 협력이 필요하므로 제정안과 같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법 성격의 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성별에 따른 지원보다 현행대로 장애의 중증여부와 소득기준 등에 따라 지원함이 더 효율적이라 여겨지므로 기존의 장애인 관련 개별 법령들과 현행 장애인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2012: 13).

지금의 장애인관련 법률은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고 쪼개져 있어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장애인 기본법이 없다. 이는 각 법률 간의 연계와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다양한 문제들이 교차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들을 비가시화 하고 있다. 이에 여성장애인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운동에 대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활동은 2010년 故곽정숙의원에 의해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해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이 법안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취업, 약육, 교육 지원, 장애여성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총 23개 조항이 담겨있었다).

이후 19대에서 김정록의원이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이 역시 제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2017년부터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여성장애인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여성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에 필요한 제도들을 담은 법안들을 마련하여 ‘여성장애인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단체간의 연대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나아가며

누구나가 다르다. 우리 중 어떤 이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다름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아주 눈에 띄는 방식으로 다르다. 우리는 때때로 우연히, 때때로 선택에 의해 모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어떤 사람은 발로 이동하는 반면, 다른 이는 휠체어를 사용하여 혹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언어와 방언으로 그리고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행동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가족 안에서조차도 그러하다 (Ronald J. Berger(2016), *Introducing Disability Studies*; 44p)

장애와 관련한 복잡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용하는 법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때때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때때로 비의도적으로 보아 온 어휘들과 어구들에 대해 더 인식하여야만 그 안에 목적과 방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프레임에 대한 제도와 정책들에 대해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관료화되었거나, 권력과 위계 안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따라 운동방향성이 전복 되어버리는 등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장차법 제정 10년을 맞아 장애해방운동과 여성장애인운동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고, 장애인 운동의 의식화와 조직화는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기억해야 한다. 장애와 여성장애인을 향한 다양한 수위의 차별과 혐오, 배제, 폭력 등이 하나의 맥락으로 뒤섞여 있는 지금, 우리는 사회구조적 문제해결에 대해 집중함으로써 무엇이 장애의 개념을 구성하고, 누가 다른 사람에 의해 장애인이라 호명되며, 장애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 고민을 통해 새로운 운동 방향을 조직하고 그에 따른 제도와 법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보건복지위원회(2012), 『검토보고서』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5), 『2014 장애인실태조사』
전남여성장애인연대(2013~2017), 『여성장애인실태조사 자료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2017),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Ronald J. Berger(2016), 『Introducing Disability Studies』 :44p
수전 웬델(2013), 『거부당한 몸』 , 그린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전남지역 정책토론회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나?

허주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나?

허주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1. 머리말

장애계의 기대 속에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0년을 맞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에 맞서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라며 범장애계가 연대하여 마침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던 날, 우리는 ‘사회에서 권리’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며 벅찬 감격에 떨었던 기억이 새롭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받은 권익의 효과적인 구제’를 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기술(김예원 외, 2017)하고 있다. 즉,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서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률 이행 대상이 되는 기관에게 장애인차별을 금지 혹은 예방을 위한 준비를 요구하고, 둘째, 이미 일어난 장애인차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하게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2010년 전라남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제정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전라남도장애인차별금지조례’)에 대한 내용과 이를 통해 추진한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의미와 향후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차별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이 규정의 취지는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개인이나 민간 조직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지원 등의 임무(김예원 외, 2017)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전라남도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과정과 추진사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2010년에 제정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장애관련 조례로는 이례적으로 가장 빠른 시기에 많은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개의 광역자치단체, 229개 기초자치단체중 96개가 각각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전남, 광주, 경기,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으며, 이는 조례 제정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내용의 학습도 하지 않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려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따른 업무 증가를 싫어하는 공무원을 설득하지 못해 임의규정 투성으로 전략한 내용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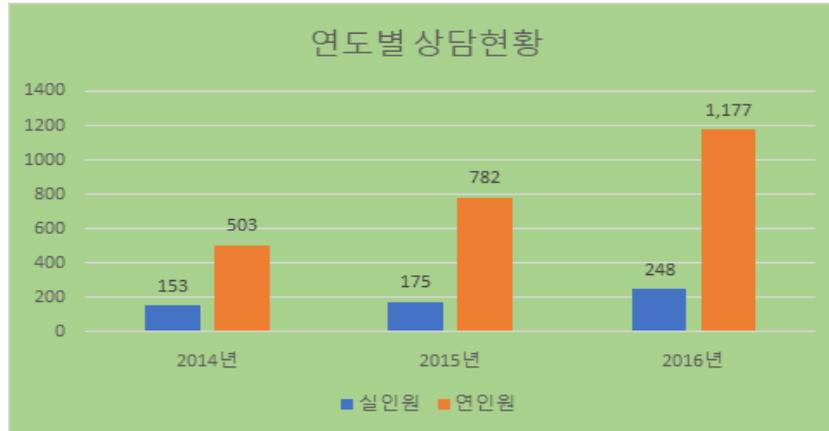
순서	광역자치단체	광역조례 현황(A)	기초자치단체 수(D)	기초조례 현황(B)	조례 제정 현황(C=A+B)	조례제정률 (B/D)
1	강원도	1	18	1	2	6%
2	경기도	1	31	24	25	77%
3	경상남도	0	18	2	2	11%
4	경상북도	1	23	3	4	13%
5	광주광역시	1	5	5	6	100%
6	대구광역시	1	8	4	5	50%
7	대전광역시	1	5	4	5	80%
8	부산광역시	1	16	7	8	44%
9	서울특별시	0	25	14	14	56%
10	세종특별자치시	1	1	0	1	0%
11	울산광역시	0	5	3	3	60%
12	인천광역시	1	10	6	7	60%
13	전라남도	2	22	8	10	36%
14	전라북도	1	14	5	6	36%
15	제주특별자치도	1	2	0	1	0%
16	충청남도	1	15	6	7	40%
17	충청북도	1	11	4	5	36%

출처: 법제처(2018. 3. 26 현재)

반면 전라남도는 두 번의 조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조례에 규정되어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권 상담

최근 3년간의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실인원에 비해 연인원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 명의 의뢰인에 대한 지원 회수와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사례의 심각성과 필요한 지원의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인권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주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매년 3월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설명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9월에는 차년도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민원, 청사, 공보, 도서관 등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연도	교육대상	교육내용	참여 인원
2014	공무원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시·군청 공무원 5회, 경찰공무원 4회, 교육공무원 1회, 보건공무원 1회 총 11회, 872명
	도민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장애인 당사자 7회, 거주·이용시설 종사자 13회, 초·중·고등학교 학생 34회, 기타 2회 총 56회, 2,247명
2015	공무원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시·군청 공무원 6회, 경찰공무원 1회 / 해양경찰 2회/교사 1회 총 10회, 621명
	도민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장애인 당사자 29회, 거주시설·이용시설 종사자 21회, 초·중·고등학교 학생 62회, 기타 79회 총 191회, 7,357명
2016	공무원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행정기관 13회, 교육기관 2회, 경찰 2회 총 17회 950명
	도민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초·중·고학생 38회, 거주·이용시설 종사자, 거주인, 이용인 38회, 활동지원인력,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48회 총 121회 4,417명

3) 모니터링

통상 외부 모니터요원을 별도로 선발하여 진행되는 타 기관에 비해 일관된 관점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실시하였으며,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공공도서관, 영화관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해 왔다. 특히 시·군청은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미흡한 영역에 대해서는 재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22개 시·군청사의 화장실은 모니터링 결과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결과 개선되어 이용 가능한 시설이 되었다.

4) 장애 차별적 자치법규 개정

2012년 장애를 장애 차별적 표현이 담긴 125개의 전라남도를 포함한 22개 시·군 자치법규를 개정 요구서를 내어 123개가 개정 또는 폐지된 바 있다. 이 또한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제도적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5) 홍보

도·농 복합도시라는 지역의 특성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는 필연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어 케이블 자막광고, TV 영상홍보, 버스 광고, 반상회보, 시·군청 홈페이지 배너 달기, 리플릿 제작 배포, 상담홍보현판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다.

4. 맺는말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의무가 부여된 개인 또는 기관의 예방적인 적극적 조치와 함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하나의 지원체계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구성원들의 한층 높은 '인권감수성'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언을 끝으로 이 글을 맺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대응하는 ‘나무꾼이 아닌 진검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대상기관에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들을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등 법 이행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시 반복되는 것이 조사대상기관들이 법 이행 대상기관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대상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기관에서는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몰라 조사를 서로 미루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이혜경 외, 2017)

둘째, 장애 당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차별 사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를 제안한다. 아무리 좋은 법률을 가진 사회라 해도 그 구성원들이 행동하지 않는 한 변화는 요원한 것임을 이미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예원 외,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장애인법연구회, 나남출판 2017
 이혜경 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moleg.go.kr)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전남지역 정책토론회

[토론 2]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노력과 개선 과제

최경순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노력과 개선 과제

최경순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1. 「전라남도장애인차별금지조례」 추진 현황

전라남도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의 「전라남도장애인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1년~2015년 제1차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 제2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과 시행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16년 4대 전략, 42개 핵심사업(11개 담당부서, 8,240백만원)을 시작으로 2017년 4대 전략, 41개 핵심사업(11개 담당부서, 11,144백만원), 2018년 4대 전략, 41개 핵심사업(11개 담당부서, 11,200백만원) 등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실적을 취합 기본계획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결코 복지나 서비스 제공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도 행정 전반에 걸친 개선과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전라남도장애인차별금지조례」 추진 분야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우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친화적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 및 이행 촉구, 권리회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평가지표의 개발을 통한 평가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및 시·군이 운영하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개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자치법규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회복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舊 전남장

에(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지원과 연계를 위해 광역단위 민관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교육과 및 홍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상 기관 및 담당 업무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과 강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이용해 도민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대상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방법 제시,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 인권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과 지역간 형평성 고려하여 자원·기관·서비스·전달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다.

3. 「전라남도장애인차별금지조례」 추진 과정의 한계와 개선 과제

가장 큰 한계라면 전문성과 연속성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담당 공무원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애인 업무 특성과 이와 관련한 환경 혹은 행정시스템의 문제가 더욱 크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는 일반적인 복지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장애인 업무는 과중한 업무”로 인식, 담당하기를 꺼려하거나 담당 하더라도 빨리 다른 업무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관련 업무의 시스템화와 래퍼런스 혹은 매뉴얼 구축을 제안한다.

관련 업무를 오래 지속해온 민간과의 긴밀한 연계와 정보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고 추진할 수 있다면 전문성과 연속성 부족으로 인한 지연, 중복 등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마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법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이다. 결국 차별의 문제는 장애인당사자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원칙이 행정절차나 제도나 정책집행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새로운 고민거리로 남는다.

이번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자칫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권리 주체로서의 장애인과 실제 장애인의 삶의 연결고리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전남지역 정책토론회

[발제 3]

공을 차야 골을 넣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
누가 무엇을 왜 준비해야 하는가?

도연
(활동가)



공을 차야 골을 넣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 누가 무엇을 왜 준비해야 하는가?

도연 (활동가)

호각은 울렸다.



2006년,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조례가 광주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 서명을 받아 만들어진 조례였습니다. 한국에 첫 자립생활센터가 광주에 들어선 만큼이나 큰 의미였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8년 현재 9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례에 명시된 위와 같이 규정된 자립생활 지원 계획은 단 한번도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호각은 울렸지만 아직 키오프조차 하지 못한 셈. 그렇게 광주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허송하는 동안 서울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과 목표 인원 및 예산이 담긴 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되었습니다.

3790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뽕!’ 키오프하다.



(사진 : 2016년 11월 9일, 광주시청 본관 앞 이러려고 인권의 도시 시민이 됐다... 자괴감 들어 기자회견)

2016년 11월 9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청 본관 앞 천막농성에 들어가며 5년 (2017~2021)동안 시설 거주 장애인 100명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광주시가 5년 간 100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약속하면서 농성돌입 9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010년 광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전수 조사와 2016년 자립생활 환경구축 실태조사가 제안하고 재확인한 자립생활 지원 시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립생활 계획 수립을 위한 TF, 끝을 맺기 위해 세트 플레이를 하다.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 자립생활센터, 거주시설 등으로 구성된 자립생활 계획 수립 TF는 2017년 1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총 10회의 논의를 통해 광주광역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2017~2021, 5년 동안 137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인원과 예산이 반영된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5개년 사업목표

(단위 : 명, 개소, 백만원)

사업내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인원) · 개인별 자립지원금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캠프 및 단기체험프로그램 지원 · 직업훈련교육 · 건강검진 및 치료 	28	28	28	28	25
· 자립생활지원 체험홈 운영	5	10	10	10	10
· 자립생활가정 ‘우리집’ 운영	5	10	15	15	15
· 자립생활전환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회	5회	5회	5회	5회
· 자립생활지원협의체 구성·운영	4회	6회	6회	6회	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 관련 정보 제공 · 당사자, 가족에게 정보지 제공 	-	-	-	-	-
·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인원 (1인당 자립정착금 지원액)	10 (5백만)	30 (5백만)	30 (8백만)	30 (8백만)	30 (10백만)
· 이음캠프 지원 대상 인원	40 (1회)	80 (2회)	80 (2회)	80 (2회)	80 (2회)
· 사업비 : 총 4,244백만원	297	812	1,025	1,025	1,085

○ 5개년 예산 : 4,24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금액 /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총액 4,244백만원	297	812	1,025	1,025	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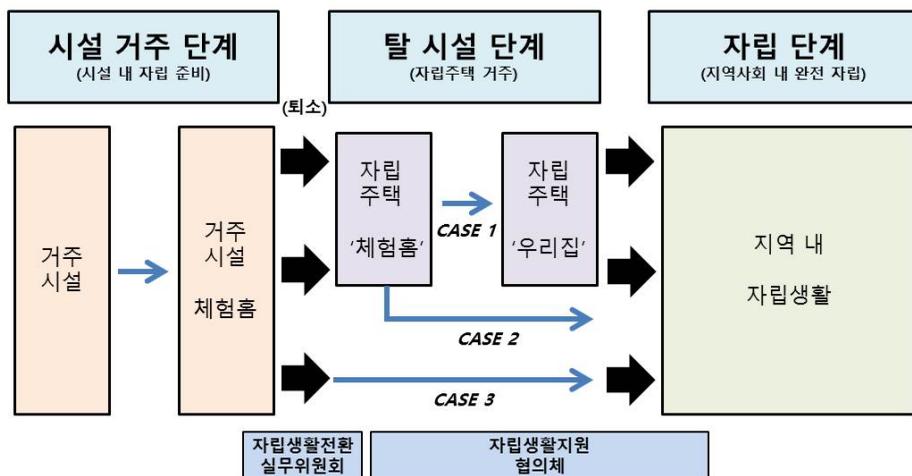
자립생활 계획 수립, 땅이 고르지 못하면 꼴을 넣을 수 없다.

공청회를 끝으로 광주시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TF 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수립된 5개년 계획을 실효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 거주시설부터 자립생활센터까지 각기 다른 지향과 성격을 가진 이들이 함께 손발을 맞춰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 * 최중증 장애인이 자립을 위해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나?
- * 부양의무자 기준 등 걸림돌이 상존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통한 생계비 지원 외에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방법은 있나?
- *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나?
- * 지자체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은 기대할 수 있나?

하지만 지역 사회의 조건에 근거한 위와 같은 쟁점들로 아직 아래와 같은 흐름도에 따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지 못한 상황입니다. 즉, 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 등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각 주체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제도적인 걸림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열심히 땀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 땅이 다져지지 못해 힘껏 달릴 수 없는 형국입니다.

탈시설 자립전환 흐름도



‘인권침해’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달려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딛고 선 지역사회라는 운동장은 평평하게 잘 다져진 적 없었습니다.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보장할 것, 이동할 권리를 보장할 것,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하며 뛰어다니던 그 발 밑에서 조금씩 다져졌을 뿐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현실, 한 번 이동하려면 비장애인에 비해 몇 배의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없는 조건’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근거로 들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레파토리는 수 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노예 사건’, 21세기가 시작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중세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직’에 머뭇거리며 집과 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운동장으로 나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을 대하는 자세는 ‘그러니 장애인은...’이 아니라 ‘이제 좀 이 사회가...’라 반응하며 울퉁불퉁한 지형을 모두가 밟아 평평하게 만들도록 행동 주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전남지역 정책토론회

[토론 3]

『장애인 자립생활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

모지환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연구위원)



『장애인 자립생활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

모지환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장애인 복지계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자립생활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장애인 시민권 운동의 한 축으로 시작된 자립생활운동은 중증장애인도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 제공된다면 가족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 가능하다는 확신에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의 결과 이전까지 장애인복지계를 지배해 오던 시설 보호와 재활패러다임의 일대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자립생활은 문제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고 자기 통제와 자기결정을 강조한 소비자로서 장애인의 역할을 강조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 속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발제자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사례를 통해 「광주광역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2017년~2021년)」의 수립과정과 내용을 소개하고, 실효적 실행을 위한 아래와 같은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 * 최중증 장애인이 자립을 위해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나?
- * 부양의무자 기준 등 걸림돌이 상존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통한 생계비 지원 외에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방법은 있나?
- *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나?
- * 지자체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은 기대할 수 있나?

토론자는 발제자의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한 후, 장애인 자립생활의 쟁점을 둘러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계의 자립생활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철학을 바탕으로 주장되었지만, 현재는 자립생활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과 돌봄과 요양의 차원으로 보는 관점이 모두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많은 부분 사회적 모델에 반하거나 내용

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장애를 의료적 기준에만 맞추어서 정의되는 현상, 사정의 단계에 이용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상, 환경적 변화에 대한 급여 내용의 부족, 활동보조인 계약 시 기관중심의 전달체계, 과도한 본인부담금 등에 따라 선택과 통제권이 제한되는 현상, 결과적으로 역량강화가 제한되고 사회변화 촉진이 저해되어 궁극적인 사회통합이 제한되는 현상 등은 사회적 모델의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하다.

장애인자립생활이념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사회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서비스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에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절충한 연구들을 적용하여 분석해보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 서비스 대상에서 기능상 제약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급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서비스 결정권을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며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은 부족하고, 가족의 참여도 쉽지 않다. 재정차원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예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한 대상자 선정의 보편성실현과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24시간 서비스 제공, 직접지불제도나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통제권 강화의 필요성 등이 주장되고 있다.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활동보조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활동 지원기관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여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인 장애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¹⁾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기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핵심 문제점은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장애인 활동보조급여를 다른 유사 사회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²⁾ 개선방안은 지면관계 상 생략하겠으나,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및 예산 집행 상황, 사업의 운영 및 활동보조인의 노동실태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도 점검 및 감독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둘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방법은 정책적 접근이 너무 광범위하고 토론 시간의 제한으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토론자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도입운동과 사회적경제 패러다임의 적용을 고민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협동조합을 활용한 장애인 자립생활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이념과 선택·결정을 존중하는 자립생활의 이념은 공존할

1) sbs 8 뉴스, 「활동보조인 ①, ②」, 2018.1.23.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2016.10.6.

수 있다고 판단되나 자립생활센터와 협동조합이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지점들이 많이 존재할 것이다. 장애인당사자성을 중시하는 자립생활센터처럼 운영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할 수 있는지, 사업대상자로서 전 장애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지, 센터가 지니고 있는 운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다. 자립생활협동조합 모델, 자립생활센터 지원모델, 협동조합형 자립생활센터 모델 중 가장 현실적합성 있는 모델이 어떤 것일까? 세 가지 모델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보조지원사업, 웹기반 정보제공 및 아이템 개발, 안마업, 관광업 등 사업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면관계 상 구체적 논의는 다루지 않겠으나, 토론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은 형해화(形骸化)되고, 복지부도 지자체도 책임성을 망각한 채 회피하며 귀찮아한다. 장애당사자주의는 온데간데없고, 독점적 수탁법인의 관료주의의 병폐가 만연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저임금 미숙련 인력으로 감당하게 하는 운영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은 기대할 수 있나? 성남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가 따로 실시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의 예산을 '중복지원예산'으로 규정하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이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당사자들의 욕구를 무시한 일방적 복지축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가 이 시행령을 무기로 '복지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장애인 분야에서는 활동지원, 출산지원 등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예산감축위기를 겪게 된다. 이에 장애인 지원 단체 및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서비스 보장'공약이행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추가지원은 헌법 117조와 지방자치법 제 9조에 근거한 장애인의 생존권적 요구의 결과물이며, 유사·중복이 아닌, '부족한 제도의 확대이자 보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이용자들의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

3) 미디어오늘, 2015/12/2

원사업의 이용경험은 어떠했을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활동 추가지원은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그리고 긴급구조 등을 제외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뿐 아니라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장애인 자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장애인 이용자 당사자들의 욕구가 가장 큰 반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가 이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으로 장애인은 혼자 있는 것의 두려움과 돌봄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의 적은 급여만으로는 장애인이용자들의 홀로 남겨지는 시간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성남시는 이러한 부족한 중앙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그렇다면 왜 장애인이용자들은 지자체의 추가급여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충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족감을 느끼는 것일까? 이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급여시스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지자체의 추가지원은 장애인 대상자의 제한성의 문제나 급여의 불충분성의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추가급여를 제공받더라도 여전히 장애인이용자들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엔 역부족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추가지원 제도로 인한 삶의 변화는 분명하다.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재활 패러다임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관련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 2017년까지 600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탈시설화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이 계획은 인권을 바탕으로 장애인 탈시설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탈시설 패러다임을 주류적인 것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설정하였던 목표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 간에 탈시설에 대한 개념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 시설 서비스와 지역 기반 서비스가 병존하여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이 더 필요하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계획이 부족하였으며, 통합적 탈시설-자립지원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 집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활동지원제도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탈시설은 성과를 내기 힘든 일이라는 하지만, 장애인 인권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의미 있는 정책이며, 성남시와 서울시의 사례는 지방선거의 유권자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어떤가?

끝으로,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제안을 한다. 일본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가 발달된 국가로 장애인의 독자적인 활동보조서비스모델을 구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립생활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⁴⁾

한국의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은 크게 두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한 축은 사회복지시설비리 척결 투쟁으로 재단 및 개별적인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이었다. 또 한 축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두 축 모두 겉으로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투쟁 과정 속에서 탈시설운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법적 근거 마련, 지원체계 마련, 예산 배정 등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시설 쪽으로 장애인정책을 전환했다고 말로만 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은 왜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 사회가 답을 하게 끊임없이 지역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 2009년 1월 10일자로 국내 발효된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다시 출발해보면 어떻게?

4) 나카니시 쇼지 지음. 모지환 옮김. 『일본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7.을 참조바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전남지역 정책토론회

| 인 쇄 | 2018년 4월

| 발 행 | 2018년 4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주 소 | (61476)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아모레퍼시픽 5층

| 전 화 | (062) 710-9715 | F A X | (062) 710-97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616-6 9333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